## ◆ [증권사 ≒ 금융투자회사] (증권사 ⊂ 금융투자회사)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회사'란 이름이 등장합니다. 금융투자회사는 과거 증권사, 종금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가 모두 합쳐진 것이라 보면됩니다. 자본시장법은 기존의 증권거래법(증권사) 이외에도 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신탁업법 등 여러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여, 기존 증권거래법상의 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로 금융업무를 확대시켜 주었습니다. 금융투자회사는 이렇게 해서 탄생된 회사인 거죠.

<u>따라서 이 회사는 위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금융기능별 6가지 업무를 다</u> <u>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이름에서 이를 반영한 것이 '신한금융투자'입니다.</u> 자본시장법의 취지에 발맞추어 '신한증권'에서 '신한금융투자'로 바꾼 것이죠.

하지만 다른 증권사들은 이름을 그렇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물론, 업무영역은 '신한금융투자'처럼 넓혔지만, 기존에 일반 사람들의 입에 '증권사'가 더욱 익숙하기 때문에 굳이 바꾸지 않은 것이죠.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대우증권', '삼성증권' 등 대부분이 그러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금융투자회사와 증권사는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러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저 50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 ◆ [자산운용사]

\_

<u>위의 6가지 업무 중에서 '집합투자업'을 하는 금융회사를 '자산운용사'라고</u> 합니다.

<u>예, 맞습니다. '미래자산운용' 등과 같이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를 일컫는 겁니다. 과거 투신사(투자신탁회사)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투신사라는 명칭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u>

\_

<u>자산운용사는 크게 주식과 채권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인 '증권펀드',</u>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인 '부동산펀드',

마지막으로 주식 채권 그리고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인 <u>(특별자산펀드'.</u>

이렇게 크게 나누어집니다.